

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01.01)

○ 방문 목욕의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60분 이상)	47,670<7,151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(40분 이상 60분 미만)	38,136<5,720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) 목욕 (60분 이상)	84,670<12,701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) 목욕(40분이상 60분미만)	67,736<10,160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) 목욕 (60분 이상)	76,340<11,451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) 목욕(40분 이상 60분 미만)	61,072<9,160>

○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%를 산정한다.

○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,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해당자)	9% 또는 6%